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개발 기획 업무를 수행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항공청에 헬리콥터 감항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철도치안센터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등을 각각 증원하며, 항공위성서비스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본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정원 1명(6급1)을 재배치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신설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협업 하에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을 “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을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제47조제2항 단서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을 “서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 구역란 중 “부강화물선”을 “부강화물선, 서해선(대곡기점 73.8km~홍성역), 평택선”으로 한다.

별표 5의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의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의 관할 구역란 중 “서해선”을 “서해선(대곡역~대곡기점 73.8km)”으로 하고, 같은 란의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의 관할 구역란 중 “(우보역 남

쪽)”을 “(의성역~모량역)”으로, 같은 란 중 “동해선”을 “동해선(부산진역~후포역 남쪽)”으로, 같은 란 중 “(김천역~어등역), 문경선, 신동화물선”을 “(김천역~점촌역 남쪽), 신동화물선, 대경선”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의 관할 구역란 중 “(양수역~우보역), 충북선(봉양역~주덕역), 경북선(어등역 동쪽)”을 “(양수역~의성역 북쪽), 충북선(봉양역~주덕역), 경북선(영주역~점촌역)”으로, 같은 란 중 “중부내륙선(부발역 남쪽~충주역)”을 “중부내륙선, 동해선(삼척역~후포역), 문경선”으로 한다.

별표 6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수원센터란 다음에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대곡센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곡센터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 구내
------	----------------

별표 7 중 총계 “1,013”을 “1,020”으로, 일반직 계 “1,003”을 “1,010”으로,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7”을 “29”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1”을 “59”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6”으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9”를 “58”로,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9”를 “15”로 한다.

별표 7 중 행정사무관 “84”를 “82”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2”를 “61”로, 철도경찰주사 “2”를 “1”로,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4”를 “17”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2”를 “1”로, 시설주사 “62”를 “61”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1,018”을 “1,025”로, 일반직 계 “1,008”을 “1,015”로,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7”을 “29”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61”을 “59”로,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을 “6”으로,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1”을 “60”으로,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4”를 “2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행정사무관 “86”을 “84”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6”을 “65”로, 철도경찰주사 “2”를 “1”로,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5”를 “18”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2”를 “1”로, 시설주사 “61”을 “60”으로 한다.

별표 8 중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주사 “5”를 “4”로 한다.

별표 9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0”을 “29”로,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5”를 “8”로, 시설사무관 “23”을 “24”로, 행정주사 “38”을 “35”로, 시설주사 “150”을 “149”로 한다.

별표 9의2 중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0”을 “29”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항공사무관·전산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10”을 “14”로,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11”을 “9”로, 시설주사 “143”을 “141”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01”을 각각 “504”로, 철도경찰주사 “72”를 “73”으로, 철도경찰주사보 “160”을 “161”로, 철도경찰서기 “194”를 “195”로 한다.

별표 11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01”을 각각 “504”로, 철도경찰주사 “76”을 “77”로, 철도경찰주사보 “156”을 “157”로, 철도경찰서기 “194”를 “195”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09”를 각각 “610”으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1”를 삭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4”로, 항공사무관 “13”을 “15”로, 행정주사 “13”을 “11”로, 항공주사 “161”을 “160”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09”를 각각 “610”으로, 서기관·과학

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을 “2”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1”를 삭제,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를 “4”로, 항공사무관 “13”을 “15”로, 행정주사 “12”를 “10”으로, 항공주사 “161”을 “160”으로 한다.

별표 15 중 행정사무관 “6”을 “7”로, 행정주사 “15”를 “14”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7”을 각각 “128”로, 3급 또는 4급 이하 “126”을 “127”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33”을 각각 “332”로, 3급 또는 4급 이하 “332”를 “331”로 한다.

별표 18 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별표 20 “3. 제6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을 삭제하고, “총계 1”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를 삭제하고, “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3항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9의2의 정원 1명(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9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생략)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대구국토관리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며, 수원국토관리사무소장,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u>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u>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보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남원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u>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은</u>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장, 순천국토관리사무소	② ----- ----- ----- ----- ----- ----- ----- <u>전주국토관리사무소장 및 김해국토관리사무소장</u> ----- ----- ----- ----- ----- ----- <u>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u> ----- ----- ----- ----- -----

장,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 및 영주국토관리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46조(철도경찰대) ① ~ ③ (생략)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삭제

9.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10. · 11. (생략)

⑤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신설>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생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46조(철도경찰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7. (현행과 같음)

<삭제>

10. · 11. (현행과 같음)

⑤ -----
-----.

1. ~ 16. (현행과 같음)

17. 여객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 물품 등에 대한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① (현행과 같음)

략)

② 지방철도경찰대장은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지방철도경찰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제61조(한시정원) ①·② (생략)

③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일자리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중 1명(철도경찰사무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④ 삭제

과 같음)

② -----
-----, -----
----- 서기관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한시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013</u>		<u>1,020</u>	+7
일반직 계	.		.		.	
	.		.		.	
			<u>1,003</u>		<u>1,010</u>	+7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	
	.		.		.	
			<u>27</u>		<u>29</u>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		.	
	.		.		.	
			<u>61</u>		<u>59</u>	-2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철도 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		.		.	
	.		.		.	
			<u>1</u>		<u>6</u>	+5

•	•	•	
•	•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9</u>	<u>58</u>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9</u>	<u>15</u>	+6
행정사무관	<u>84</u>	<u>82</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2</u>	<u>61</u>	-1
•	•	•	
•	•	•	
철도경찰주사	<u>2</u>	<u>1</u>	-1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 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 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	<u>14</u> · ·	<u>17</u> · ·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	<u>2</u> · ·	<u>1</u> · ·	-1
시설주사 · ·	<u>62</u> · ·	<u>61</u> · ·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토교통부 공무원 정원표(제5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u>1,018</u>		<u>1,025</u>	+7
	.		.		.	
	.		.		.	
일반직 계			<u>1,008</u>		<u>1,015</u>	+7
	.		.		.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27</u>		<u>29</u>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61</u>		<u>59</u>	-2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철도 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 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사무 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1</u>		<u>6</u>	+5

•	•	•	
•	•	•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61</u>	<u>60</u>	-1
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 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u>14</u>	<u>20</u>	+6
행정사무관	<u>86</u>	<u>84</u>	-2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66</u>	<u>65</u>	-1
•	•	•	
•	•	•	
철도경찰주사	<u>2</u>	<u>1</u>	-1
•	•	•	

철도경찰주사 · 행정주사 · 통계 주사 · 공업주사 · 환경주사 · 항 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 방송통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	<u>15</u> · ·	<u>18</u> · ·	+3
행정주사 · 공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 ·	<u>2</u> · ·	<u>1</u> · ·	-1
시설주사 · ·	<u>61</u> · ·	<u>60</u> · ·	-1

신·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행정사무관	.		.	.	+1
	.		.	.	
			<u>4</u>	<u>5</u>	
행정주사	.		.	.	-1
	.		.	.	
			<u>5</u>	<u>4</u>	
	.		.	.	
	.		.	.	

신·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4</u>	<u>5</u>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0</u>	<u>29</u>	-1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u>5</u>	<u>8</u>	+3
시설사무관	<u>23</u>	<u>24</u>	+1
행정주사	<u>38</u>	<u>35</u>	-3
•	•	•	
•	•	•	
시설주사	<u>150</u>	<u>149</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9의2]

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4</u>	<u>5</u>	+1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30</u>	<u>29</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항공 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통계사무 관 · 사서사무관 · 환경사무관 또는 연구관	<u>10</u>	<u>14</u>	+4
·	·	·	
·	·	·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u>11</u>	<u>9</u>	-2
·	·	·	
·	·	·	
시설주사	<u>143</u>	<u>141</u>	-2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01</u>		<u>504</u>	+3	
일반직	계		<u>501</u>		<u>504</u>	+3	
		·		·	·		
		·		·	·		
철도경찰주사			<u>72</u>		<u>73</u>	+1	
		·		·	·		
철도경찰주사보			<u>160</u>		<u>161</u>	+1	
		·		·	·		
철도경찰서기			<u>194</u>		<u>195</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501</u>		<u>504</u>	+3	
일반직	계		<u>501</u>		<u>504</u>	+3	
		·		·	·		
		·		·	·		
철도경찰주사			<u>76</u>		<u>77</u>	+1	
		·		·	·		
철도경찰주사보			<u>156</u>		<u>157</u>	+1	
		·		·	·		
철도경찰서기			<u>194</u>		<u>195</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609</u>	<u>610</u>	+1
일반직 계	<u>609</u>	<u>610</u>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u>	<u>2</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항공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2</u>	<u>4</u>	+2
·	·	·	
·	·	·	
항공사무관	<u>13</u>	<u>15</u>	+2
행정주사	<u>13</u>	<u>11</u>	-2

	.	.	.	
	.	.	.	
항공주사	<u>161</u>	<u>160</u>	-1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5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09	610	+1
일반직 계	609	610	+1
·	·	·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2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u> <u>또는 항공사무관</u>	1	<삭 제>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4	+2
·	·	·	
·	·	·	
항공사무관	13	15	+2
·	·	·	
행정주사	12	10	-2

	.	.	.	
	.	.	.	
항공주사		<u>161</u>	<u>160</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5]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8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u>6</u>	<u>7</u>	+1
	.		.	.	
행정주사			<u>15</u>	<u>14</u>	-1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

국토지리정보원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9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27</u>	<u>128</u>	+1
일반직 계	<u>127</u>	<u>128</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26</u>	<u>127</u>	+1

신 · 구 정원 대비 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6의2]

항공교통본부 공무원 정원표(제5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333	.	332	-1	
일반직	계	.	333	.	332	-1	
3급	또는	4급 이하	332	.	331	-1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8]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60조제3항, 제60조의3
제2항 및 제60조의4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2. 부동산소비자보호기확단 (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u>2. 부동산</u> <u>소비자보</u> <u>호기확단</u> <u>(존속기</u> <u>한: 2025</u> <u>년 3월 31</u> <u>일)</u>	<u>2. 부동산</u> <u>소비자보</u> <u>호기확단</u> <u>(존속기</u> <u>한: 2027</u> <u>년 3월 31</u> <u>일)</u>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0]

국토교통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61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3. 제61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 (존속기한: 2025년 2월 28일)</u>	<u>3. 제61조 제3항 관 련 한시정 원(존속기 한: 2025 년 2월 28 일)</u>	<u><삭 제></u>	-3. 제61 조제3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5 년 2월 2 8일)
<u>총계</u>	<u>1</u>	<u><삭 제></u>	-1
<u>일반직 계</u>	<u>1</u>	<u><삭 제></u>	-1
<u>철도경찰사무관 ·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환경 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 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